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 2026.08.0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코나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 카드 등「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전자문서"라 함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합니다.
    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을 준용합니다.

제6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4.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2. 이메일주소 : help@konamoney.com
3. 전화번호 : 1899-4118(부가서비스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앱내 고객센터 번호 확인)

제10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해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도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3. 위조·변조된 접근매체의 사용, 도용, 명의도용, 부정사용 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22조, 제27조,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전자금융거래 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 고객센터 업무 담당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익스콘벤처타워 8층 코나아이 고객센터 담당
3. 이메일주소 : help@konamoney.com
4. 전화번호 : 1899-4118(부가서비스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앱내 고객센터 번호 확인)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8조(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약관의 명시 및 효력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3 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21조(정의)

①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약관에서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22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3조(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4조(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자" 계정 등에 충전 등의 방법을 통해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25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6조(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축소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용자"가 잔액 전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②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유효기간 내에 "회사"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홈페이지 또는 앱에 미리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유효기간의 도래 사실
2.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및 방법
3.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잔액 환급기준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멸시효 관련 주요 사항을 거래 시 팝업 또는 요약 동의서 등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일 및 완성되기 전 미사용시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유효기간 도래 전 소멸 예정 사실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준용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감독당국의 약관 심사 기준 및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9조의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

제29조(환급기준)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충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유효기간 도래 및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잔액 환급기준에 관한 통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릅니다.

⑥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미사용잔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충전분을 환급합니다.

1.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90%
2. 최종 충전 시점의 잔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 95%

⑦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환급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30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200만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카드당 한도 및 총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1조(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이용자 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신탁
2. 예치
3.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이용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는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용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식별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3조(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① "회사"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제32조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 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 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4조(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5조(직불결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금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②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구매 시 직불결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고 가맹점에 이 내역을 통보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37조(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①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